

2002년 법인세 신고 안내

◆ 신고대상 법인

- 사업연도가 2001.12월말로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

◆ 신고기한 : 2002년 4월 1일

-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이나, 금년은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날까지 연장

◆ 이번 신고시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

- ① 정규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
 법인이 경비 지출시 정규지출증빙(신용카드 매출전표, 세금계산서, 계산서)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%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금년에 신고하는 2001.12월말 법인부터는 가산세율을 거래금액의 2%로 인하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인이 재화·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시 -신용카드매출전표, 세금계산서, 계산서를 지출증빙으로 수취·보관하지 않은 경우 -미수취 금액의 10%를 가산세로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수취금액의 2%를 가산세 적용 (8%P 인하)

② 접대비는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만 인정

-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
-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가맹점(위장가맹점 등)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손비 처리할 수 없음

③ 중소기업 판정기준 범위 확대

- 종전에는 중소기업해당업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의 기준중 하나라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였으나
- 2001. 1.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·자본금·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 단, 다음 하나의 기준 이상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
 - 종업원 수 1,000명, 자기자본 1,000억, 매출액 1,000억원

④ 중소기업의 "결손금 소급공제기간" 확대

-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「직전과세연도」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 하여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을 「직전 1년」에서 「직전 2년」으로 확대

⑤ 출자법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

-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이므로 일정한 비율만큼 과세하지 아니함

출자대상 법인	지분비율	익금불산입율
상장·등록법인	30% 초과	50%
	30% 이하	30%
비상장법인	50% 초과	50%
	50% 이하	30%

⑥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 가산세 폐지

- 자산총액 70억원 이상(외부감사대상)법인은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불이행하는 법인세 산출 세액의 1%와 수입금액의 0.004% 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2001.12.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
- 따라서, 금번 신고대상인 12월말법인은 이번 신고시부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으며 무공고시에도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됨

⑦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

-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.
- 또한,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은 합병법인 등에 승계되지 아니하여 합병 등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2001. 12. 31.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·분할하는 분부터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무조정사항은 대부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이번 신고부터 승계가 가능한 재무조정사항

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한도액, 유가증권 평가손익,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,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지급보증충당금.

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제도

신용카드사용 활성화 및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화 등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거래자료가 노출되고 과세표준이 크게 양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법에서는 한꺼번에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2003.12.31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세부담 완화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으니 동 제도를 절세방안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신용카드, POS 거래,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

◆ 적용대상자

- ▶ 신용카드가맹 사업자, POS 도입 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증가등세액공제 신청서와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자

◆ 경감세액

- ▶ 다음 ① 또는 ②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
- 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용카드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(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)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

$$\text{세액공제} = \text{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신용카드등수입증기금액과 총수입금액증기금액중 적은금액} \times 50\%}{\text{총수입금액}}$$

※ 공제한도액 = 당해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- 직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

- ②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

업장별 신용카드등수입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

$$\text{세액공제} = \text{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신용카드등 수입금액} \times 20\%}{\text{총수입금액}}$$

- ※ POS 도입 사업자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로서 2000. 1. 1 이후 본부등과 연결하여 사업을 하거나 전자상거래를 한 자는 ②만 선택 가능

《예시》

예를들어, 사업자甲의 연간매출액이 5억원(직전연도 매출액 3억5천만원), 소득세 산출세액이 2천만원(직전연도 산출세액 1천만원)이고, 매출액 중 신용카드매출액이 3억원(신용카드매출액 증가분 1억원)이라면

$$2\text{천만원} \times \frac{5\text{천만원}(1\text{억원} \times 50\%)}{5\text{억원}} = 2\text{백만원 과}$$

$$2\text{천만원} \times \frac{6\text{천만원}(3\text{억원} \times 20\%)}{5\text{억원}} = 2\text{백4십만원 중}$$

큰 금액인 2백4십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.

◆ 중복적용 배제

- ▶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,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 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① 또는 ②를 적용.
- ▶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.

2001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·서비스업총조사 실시

조사기준일

- ▶ 2001년 12월 31일 현재

조사실시기간

- ▶ 2002년 4월 9일 ~ 4월 27일

조사대상

- ▶ 사업체기초통계조사
 - ☞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(약 310만개)
- ▶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
 - ☞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 소재하고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에 속하는 모든 사업체(약 240만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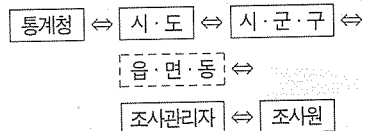
법적근거

- ▶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(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제10137호,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제10108호)
- ▶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규칙(재정경제부령, 4월 공포예정)

조사방법

- ▶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

조사체계



조사사항

- ▶ 사업체기초통계조사 : 공통 조사항목
 - ☞ 사업체명, 대표자명, 소재지, 조직형태 등 10개 항목
- ▶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특성 조사항목
 - ☞ 사업실적, 정보기술기반 및 활용, 유형자산 등 8개 항목

당부사항

- ☞ 본 조사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,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통계청 총조사 홈페이지

<http://www.nso.go.kr/~bcensus>